



: 2019-12-16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8재노3 무고                        |
| 피 고 인   | A                                 |
| 재심청구인   | 피고인                               |
| 항 소 인   | 피고인                               |
| 검 사     | 정교순(기소), 이승우(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B(국선)                         |
| 재심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재노1 판결  |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1996. 6. 13. 선고 96고단18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2. 4.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 유



##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6. 6. 13. 대전지방법원 96고단189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96노1097(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1997. 9. 26.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1.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2. 9. 18.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재노2(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02. 10. 14.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03. 12. 4. 피고인에게 역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3.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6. 4. 26.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재노1(이하 '제3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06. 7. 31.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07. 2. 9. 역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3으로 제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9. 2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모3121).

또한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6재노15로 제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거나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2. 9. 제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3748).

마. 피고인은 2017. 12. 11. 원심판결 및 제1 내지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재고단12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 16.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제1 내지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 법원 항소부로 이송하였다.

이후 이 법원은 2019. 2. 21. 제1,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기각하였으나, 제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C은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1990. 11.경에는 세입자에 불과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우선입찰권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C은 F, G, H(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위임장에 이주민인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이 이주민



인 것으로 믿고 이주민대토권 매수대금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C이 계약이행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여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3)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1)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85. 4.경부터 대전 서구 I동, J동, K동, L동 등에서 I 신시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대가로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이주민대토권(이주택지분양권, 이하 '이주민대토권'이라 한다)'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우선권(상권, 이하 '상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2) 검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이주민대토권'이 아닌 '상권'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상권'임에도 마치 '이주민대토권'을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C 등을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으며, 원심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상권'이 아닌 '이주민대토권'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과 C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지구 이주민 상권 입찰 및 우선분양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위임장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상권 우선 입찰 및 분양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양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의무를 확정시키고자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상기 본인은 동변지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장 별지에는 「위 부동산의 '이주민대토권'이 매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할(아니할) 경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는 가옥의 소유자가 가지는 '이주민대토권'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①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이주민 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세입자 및 영업세입자에게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거래계에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주민대토권)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상권)를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되어 왔으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C 등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C이 장차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계약이행 등의 문제로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의 거래대상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이주민대토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60,000,000원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의 '상권'의 가치는 위 매매대금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 제31호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0. 11.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전 서구 D 필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 C으로부터 단순히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상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C에게 '이주민대토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C 등을 무고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상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 등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이주민대토권'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이주민대토권' 또는 '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부여받을 것이 예정되지도 않았던 점[C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우선권(상권)'을 부여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1992. 2.경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전 서구 D 필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로 추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고, 이후 심사절차를 거쳐 1992. 10. 24.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자격이 부여되었다], ② C 등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상황 및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C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C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C 등을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C 등을 무고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 I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이주민대토권(이주택지분양권)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린생활용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찰받을 수 있는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숙청 상권)을 각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이주민상권 및 우선입찰 및 분양권 등이 투자가치가 높아 전매되는 것을 알고, 부동산중개업자인 M의 소개로 C, G가 운영하는 N에 대한 상권을 6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후 투자가치가 하락하자 위 6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M, C, G,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 C, G, O은 공모하여 C, G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N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민상권 우선입찰 및 분양권을 부여받았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N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민대토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60,000,000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주민대토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서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M, C, G, O을 각 무고하



: 2019-12-16

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3항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_\_\_\_\_

            판사      최리지 \_\_\_\_\_

            판사      이원진 \_\_\_\_\_